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35호 2026. 10. 1.(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2753호)
-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2754호)
-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2755호)
-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2756호)
- 예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조례 제2757호)

훈 령

- 예천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80호)

고 시

- 예천 제3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6-103호)

공 고

- 교량 통행제한 공고(한천교)(예천군 공고 제2026-1237호)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53호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예천군의회”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준다”를 “수여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의회의장”을 “예천군의회의회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상장”을 “상장, 공로패 및 재직기념패,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회 발전”을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공로패 및 재직기념패) 공로패 및 재직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에 기여한 예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임기만료 또는 사직으로 그 직에서 물러난 경우
2. 의회운영에 헌신한 의회 소속 직원(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퇴직

(정년·명예·조기퇴직을 포함한다)한 경우

제7조의3(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회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을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공직선거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되, 모범공무원 포상은 상장과 함께 수당을 수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은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광역·기초의회로 진출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조와 제7조의2를 제외한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군수, 의원, 의회사무과장, 군의 실·과·소장, 읍·면장,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할 때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군의 실·과·소장, 읍·면장,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의회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다.

③ 표창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공로패 및 재직기념패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2명,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은 외부기관이 추천한 사람이나 포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⑤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⑧ 의장은 의원과 군 및 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심의 및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를 추천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가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에 대한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이중포상의금지)”를 “(이중포상의 금지)”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심사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포상 추천일을 기준으로 의회 포상을 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처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공무원
4.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
5. 주요 비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음주운전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확정된 자
6. 그 밖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의3(포상의 취소 및 환수) ① 의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3. 공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포상의 영예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 수여 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장, 공로패 및 재직기념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여한 상장 또는 상패를 반납하게 하고,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포상을 받은 자의 사망·실종·이민, 수여한 상장

또는 상폐의 분실·훼손, 환수에 드는 비용이 환수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의 실익이 없을 때 등 의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납 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의3에 따라 포상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일과 취소 사유를 제1항의 포상대장의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공 로 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상 문)

년 월 일
예천군의회위원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재 직 기 념 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상 문)

년 월 일

예천군의회위원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공 적 조 서

(앞면)

① 성 명							③ 군번(군인의 경우)
② 생 년 월 일							
④ 주 소							
⑤ 직 업				⑥ 소 속			
⑦ 직 위			⑧ 등급(직급, 계급)			⑨ 근무기간(수공기간)	
⑩ 공적요지(50자 내외)			⑪ 공적분야코드				
⑫ 추천훈련			⑬ 추천순위				
조 사 자							
⑭ 소 속				⑮ 직 위			
직 급				성 명			
⑯ 포상 제한 여부 확인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포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 확인함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⑰							

1202-(2-1)일(1)
 190mm × 268mm 신문용지 54g/m²
 1984. 4. 26 승인

(뒷면)

주요학력 및 경력					
년월일	이	력	년월일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월일	이	력	년월일	이	력
공 적 사 항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제10조의2(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심사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포상 추천일을 기준으로 의회 포상을 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처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공무원
4.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
5. 주요 비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음주운전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확정된 자
6. 그 밖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별지 제7호서식】

포 상 대 장

호수	포 상 년월일	포상 종별	포상 기간	피 포 상 자				포상하게 된 공적내용	기념품 또는 부 상	비고
				직위또는 직명	소속또 는 주소	성별	성명			

※ 포상대장은 표창장, 표창패, 감사장, 상장, 공로패, 재직기념패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포상 제한 및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로패·재직기념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을 신설하여 포상제도의 신뢰성과 의회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로패·재직기념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 신설

(제4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

- 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직, 의회 소속 직원의 퇴직 시 상패를 수여 근거 마련
-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을 매년 1명 이내 선발하여 포상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제9조 및 제9조의2)

- 외부위원을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 7명 이내
 - 위원장 : 부의장, 부위원장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2명, 외부위원 1명
- 포상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항 반영

다. 포상 제한 및 포상의 취소·환수 근거 마련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 중복 포상을 방지하고, 징계 대상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포상 제한 기준을 마련함
- 거짓 공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았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수여한 상장 또는 상패, 수당을 환수 조치함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54호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와 이를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이민원”이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공무원
 - 나. 청원경찰
 - 다. 공무원직근로자
 - 라. 기간제근로자
3. “안전시설”이란 특이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특이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시간적으로 급박한 경우 부서장의 지휘 하에 선조치하고 후보고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 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이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및 특이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 마련
2. 심리상담
3. 피해의 치유에 필요한 일시적인 휴식시간·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직원보호 특별휴가. 다만, 특별휴가는 특이민원으로써 인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즉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일부터 익일 이내로 정한다.
7.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8.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한다.

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보호 장비 도입
2. 비상벨 및 비상연락망 구비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 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공간의 구조 보강
조치
5. 기타 군수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 설치

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특이민원 근절과 직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 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
시
2.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책상에 폭언 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재
3. 기타 군수가 특이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조치

제9조(특이민원에 대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로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하여, 민원상담(통화·면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회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제11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2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전문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즉각 분리 및 특이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공무원 보호정책을 마련한다.

제13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14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예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1. 특이민원 피해 예방 및 직원 보호 등을 위한 지원 방안 결정
2. 제7조 및 제8조 관련 추진 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
3.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이 제안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후생복지팀장, 총무팀장, 행정팀장, 예산팀장
2.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후생복지업무 담당자로 임명한다.

⑥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발 생 일					부서명	
피해 공무원	직급(위)		성별		연락처	
	성명		남	여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 ○ ○					
공무원 피해 내용 (구체적 작성)	○ ○ ○					
신청 내용	심리상담 ☐ 의료비 ☐ 휴식시간 ☐ 법률상담 ☐ 소송지원 ☐					
	은행명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및 문책 조치에 동의합니다. ☐					
증빙 자료	○ 진단서 ○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그 밖에 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					
피해 확인 (부서장 확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여 특이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이민원 발생 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근거와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상담 종료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민원응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악성민원’ 용어를 ‘특이민원’으로 정비

(제1조~제3조, 제6조~제9조)

- 상위법령 및 행정용어 정비에 따라 ‘악성민원’을 ‘특이민원’으로 변경

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법적 대응 지원 범위 확대(제7조제1항제4호)

- 손해배상 대응 중심의 지원을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등 전반적인 법적 대응 지원으로 확대

다. 특이민원 피해 치유를 위한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제7조제1항제7호)

-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근거 규정

라. 지원 경비 지급 및 중복 지원 방지 근거 규정 신설(제7조제2항)

- 지원 경비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 근거 마련

마.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출입제한 조치 신설(제9조)

- 폭언·폭행, 반복·중복 민원 등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바. 민원상담 권장시간 및 상담 종결 기준 신설(제10조)

- 1회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상담 종결 기준 규정

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및 지원체계 신설(제11조)

-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근거 마련

아. 지원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신청서 서식 신설(제13조)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서식 마련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55호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검토) ①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 부서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총괄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적법성 및 최소 수집 원칙 준수 여부
2.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명확성 및 필요성
3.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동의서 서식의 적정성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군”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인쇄할 때에는 용도를 특정해야 하며 용도에 따라 인쇄할 항목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를 “개인정보취급자”로 한다.

제1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부서별 조례·규칙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총괄부서의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 출력물에 대한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책 수립 시 사전검토 의무화(제6조의2)

나.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제11조의2)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인쇄할 때 용도에 따라 인쇄할 항목을 최소화하는 사항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록·관리 및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제15조)

- 중복 문구 삭제를 통한 조문 명확화

라. 개인정보 보호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보완(제16조)

-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근거 마련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56호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이하 “농업타운”이라 한다)이란 스마트농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연구·실증·교육 기능 등을 집적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하여 조성된 농업타운을 말한다.

가.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나. 임대형 수직농장

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라. 공동급식소 및 저온저장고

마. 기타 시설 등

2.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란 곤충 및 양잠산업의 생산·가공·연구·실증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농업타운 내에 조성된 시설로서 농업인 또는 기업 등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3. “임대형 수직농장”이란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직형 농업시설로서, 농업인 또는 전문기관(기업)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농업타운 내에 설치한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작물 생산 및 실증을 목적으로 농업타운 내에 설치하여 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스마트팜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5. “혁신 지원센터”란 농업타운 지원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6. “입주자”란 농업타운의 시설을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의 적용범위 및 기능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업타운 내 예천군 소유의 토지 및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농업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의 조성 운영
2. 임대형 수직농장의 조성 운영
3.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성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연구 및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5. 청년농업인 및 예비농업인의 교육·실습·창업 지원
6. 디지털 농업 확산 및 농업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주체) 농업타운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기관이나 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관의 지정 및 위탁) ① 군수는 농업타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농업회사법인, 지방공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기업)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③ 군수는 운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농업타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운영 목표, 시설 관리, 입주자 지원, 성과관리 등 농업타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운영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시설 운영 및 관리 방안
3. 입주자 지원 및 관리 사항
4. 성과관리 및 평가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사용·입주 및 관리

제8조(사용허가) ① 농업타운 내 시설을 사용·수익하려는 자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 등의 사용허가 절차, 사용기간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입주자 선정) ① 농업타운의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 선정 기준, 절차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농업타운 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농업타운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경작특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군수가 매년 사용료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공익적 목적 또는 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 및 입주자의 의무) ① 수탁자 및 입주자는 농업타운 내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 전대, 매매 및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입주자는 사용허가서에 명기된 사항과 시설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⑤ 입주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 희망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예천군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입주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입주자가 사용허가 취소 희망일 최소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농업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또는 입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4.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제한된 경우 입주자는 지체없이 관련 시설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 및 성과관리

제15조(입주자 지원) 군수는 농업타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컨설팅 및 기술 지원
2. 시범사업 및 실증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6조(성과관리 및 평가) ① 군수는 농업타운 운영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 결과를 농업타운의 운영 개선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농업타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문을 위하여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농업타운의 운영 및 발전 방향
2. 입주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타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1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 등에서 스마트팜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농업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농업타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타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군수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회의 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공익을 해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의 설치 목적 및 기능 규정(제1조~제4조)

- 디지털 기반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 및 생산·연구·실증 기능 수행

나. 운영체계 및 위탁근거 마련(제5조~제7조)

- 군 직영 원칙, 필요시 전문기관(기업) 위탁 가능

다. 시설 사용·입주 및 관리 기준 규정(제8조~제14조)

- 사용·수익 허가, 입주자 선정, 사용료 부과 기준 마련

라. 입주자 지원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제15조~제16조)

- 교육·컨설팅 지원 및 운영성과 평가

마.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17조~제23조)

- 주요 운영사항 심의·자문 기능 수행

바. 준용 및 시행규칙(제24조~제25조)

- 관계 법령 준용 및 시행 사항 규정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57호

예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예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새롭게 유입되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군수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5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 및 농업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의 수행 등

제8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5를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9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보조인력은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관계자 또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비, 인력,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관련 장비 활용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체계적으로 구성·운영하여 관내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을 보호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제1조,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제3조)
- 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구성·운영(제4조~제7조)
- 라. 식물방제관 및 전문·보조인력(제8조 및 제9조)
- 마. 예산지원(제10조)
- 바. 전문교육(제11조)

예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6년 10월 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80호

예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예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6. 10. 1.〉

부서별 근로자 정수의 직종별 책정내역(제11조제3항 관련)

부 서 명	직 종 명	정수	직무내용
총 계		131	
본 청 소 계		82	
기 획 예 산 실	행정보조원	2	비서요원, 행정자료실 관리
총 무 과	행정보조원	1	비서요원
홍 보 소 통 과	행정보조원	2	행정업무 보조
지 역 경 제 과	행정보조원	1	가로등 기동수리반
사 회 복 지 과	행정보조원	3	의료급여관리사,통합사례관리사
주 민 행 복 과	행정보조원	8	사회복지업무 보조
환 경 관 리 과	환경미화원	45	청소업무
	단순노무원	2	야생동물감시원
농 정 과	행정보조원	1	행정업무 보조
축 산 과	행정보조원	1	가축방역업무 보조
건 설 교 통 과	행정보조원	2	행정업무 보조
	도로보수원	7	도로보수
	단순노무원	1	주정차단속 보조
도 시 과	단순노무원	6	온천장관리
직속기관 소계		34	
보 건 소	행정보조원	25	보건업무 보조
농업기술센터	행정보조원	1	농촌지도업무 보조
	단순노무원	4	농기계수리 보조
	단순노무원	3	생균제 및 토양검정 보조
	단순노무원	1	실증시험장 시설물 관리 및 작물재배(농기계작업)

부 서 명	직 종 명	정 수	직무내용
사업소 소계		12	
체 육 사 업 소	단순노무원	1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단순노무원	2	수련관 매표 및 시설관리
	단순노무원	1	시설물관리(양궁장)
곤 충 연 구 소	단순노무원	7	호박벌 및 정서곤충사육, 꿀벌육종, 생태원 관리
맑은물사업소	행정보조원	1	행정업무 보조
의 회 소 계		2	
의 회	행정보조원	1	비서요원
	단순노무원	1	청사관리
읍 면 소 계		1	
예 천 읍	단순노무원	1	청사관리

부서별 청원경찰 정수

부 서 명	계	경 비 청원경찰	감사·단속 청원경찰			비고
			소계	상수도 보호 구역관리	하천감시 및 골재채취	
계	7	4	3	1	2	
총무과	1	1	-	-	-	
주민행복과	2	2	-	-	-	
종합민원과	1	1	-	-	-	
안전재난과	2	-	2	-	2	
맑은물사업소	1	-	1	1	-	

◇개정이유

-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보일러 및 시설물관리)에 지방전문경력관을 채용하여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함에 따라 공무원근로자 정수를 조정하여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수 조정(별표 1)

부 서 명	정 수 내 역			조 정 사 유	비 고
	조정전	조정후	증감		
총 계			감1		
체육사업소	5	4	감1	지방전문경력관 채용에 따른 공무원근로자 정수 조정	

예천군 고시 제2026-103호

예천 제3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 제3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농공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예 천 군 수



■ 농공단지계획(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1. 농공단지 명칭 (변경없음)

-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조성 요구
- 제2농공단지와 더불어 신도청시대를 맞이하는 낙후지역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
- 고용 및 소득창출이 높은 주력산업 선정, 입주 업체 맞춤형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 수립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일원
- 면적 : 180,699㎡ → 180,272㎡ (감 427㎡)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감 3,335㎡) 및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제2

농공단지 제척지역(예천군 고시 제2025-67호) 편입(증 2,908㎡)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 개발기간
 - 지정 : 2016년 ~ 2027년 12월 31일
 - 변경 : 2016년 ~ 2036년
-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C22), 금속가공제품(C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C27), 전기장비(C28), 기타기계 및 장비(C29)

6.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변경없음)

- 유치업종별 특성을 감안하고 집적화하여 생산성 도모
- 주변 환경 및 농공단지 내 생산 환경 측면을 고려한 배치
- 업종별 특성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입지 유도

< 유치업종별 계획면적 >

표준산업코드 (중분류)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합 계		122,572	100.0
C10	식 료 품	33,715	27.5
C11	음 료	23,180	18.9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65,677	53.6
C25	금속 가공제품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C28	전기장비제품		
C29	기타기계 및 장비		

- 유치업종계획도 : 게재생략

7.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성명 : 예천군수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타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의 탄력성 확보
- 단지 내부 균등한 계획고로 공장용지 이용효율 증대
- 기 조성된 제2농공단지와 연계성 강화를 위한 도로망 구축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위한 녹지 구상
- 주변 토지이용현황, 도로망, 배수체계, 지구외곽 농로 연계도로 확보를 고려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80,699	감) 427	180,272	100.0	
산업시설용지	122,572	-	122,572	68.0	가처분용지
지원시설용지	1,598	-	1,598	0.9	가처분용지
공원·녹지	22,888	감) 915	21,973	12.3	
공 원	1,924	-	1,924	1.1	
녹 지	20,964	감) 915	20,049	11.2	구역 증가 : 증) 2,420㎡, 면적 정정 : 감) 3,335㎡,
공공시설용지	33,641	증) 488	34,129	18.8	
도 로	24,079	증) 488	24,567	13.6	
주차장	2,068	-	2,068	1.1	
폐수종말처리장	3,133	-	3,133	1.7	
배수지	487	-	487	0.3	
저류지	3,874	-	3,874	2.1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교통계획 (변경)

- 폭 20m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폭 12~15m 국지도로는 격자형으로 계획
- 대상지 내부 도로는 제2농공단지의 도로체계를 고려하여 연결되는 도로의 폭원을 최소 12m로 계획
- 농기계 진출입을 위한 기타 연결로 등은 도로 구배를 고려하여 폭원 3~4m로 계획

- 원활한 내부진입 소통을 고려한 적정 도로율 확보(10% 이상)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 차 장	2,068	-	2,068	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1%

〈 가로망 계획(변경) 〉

류 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	12	12	1,884	1,906	
중로	1류	20m	1	1	92	92	
	2류	15m	2	2	450	450	
	3류	12m	6	6	1,193	1,215	
소로	3류	3 ~ 4m	3	3	149	149	배수지 진입로 등

2) 공원·녹지계획 (변경)

-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농공단지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적 영향을 완화시키고 인접 취락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완충녹지대 배치
- 사업추진에 따른 설치물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녹지 설치
- 간선도로로부터의 완충공간 확보를 위해 완충녹지 계획
- 식재를 위한 수종의 선택은 공장녹화용 수종으로서 적합성, 자연환경과의 적응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2,888	감) 915	21,973	100.0	
완 충 녹 지	① 지방도928호선변	3,250	감) 517	2,733	12.4	폭원 10m
	② 북동측 경계부	10,373	감) 1,650	8,723	39.7	폭원 10m
	③ 배수지변	4,420	감) 703	3,717	16.9	폭원 10m
	④ 북서측 경계부 법면	2,921	감) 465	2,456	11.2	폭원 10m
	⑤ 제2농공단지 경계부	-	증) 2,420	2,420	11.0	폭원 10m
소 공 원		1,924	-	1,924	8.8	

3) 상수계획 (변경없음)

가) 종사자 산정 (변경없음)

- 상근인구는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 자료와 예천 제2농공단지 사례를 적용하여 산정
- 이용인구는 교통량 추정을 위한 시설별 활동인구 추정원단위 적용

< 상근 및 이용인구 산정 >

유치업종	면적(㎡)	원단위(인/천㎡)		이용인구(인)		
		상근	이용	상근	이용	합계
합 계	124,170			589	248	837
C10 식 료 품	33,715	3.9	1.13	131	38	169
C11 음 료	23,180	2.8	1.13	65	27	92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65,677	4.5	5.9	387	103	490
C25 금속 가공제품		4.3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5				
C28 전기장비제품		5.8				
C29 기타기계 및 장비		5.4				
지원시설용지	1,598	3.87	50.08	6	80	86

주1) 산업시설 상근인구 원단위 : 「기업체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입지공급방안 연구 자료집, 국토교통부, 2016」

주2) 지원시설 상근인구 원단위 : 예천2농공단지 사례 적용

주3)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의 이용인구는 교통성검토 산출결과 적용

주4) 2개 이상 업종의 원단위는 각 업종의 원단위 평균치 적용

나) 공업용수량 산정 (변경없음)

-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환경부, 2018)」 에서 제시한 업종별 용수원 단위를 업종별 배분면적에 적용한 결과 필요한 공업용수량(일최대급수량)은 1,345㎥/일로 산정됨

〈 공업용수량 산정 〉

구 분		계획면적(㎡)	부지면적원단위 (㎡/천㎡·일)	일최대급수량 (㎡/일)	비고
계		122,572		1,345	
식료품제조업	(C10)	33,715	11.29	381	
음료제조업	(C11)	23,180	30.33	70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C22)	65,677	3.98	261	
금속가공제품	(C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C27)				
전기장비	(C28)				
기타기계 및 장비	(C29)				

다) 생활용수량 산정 (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의 생활용수는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 2010)」에 제시된 공장 기준(60~ 100 l /인·일) 중 중간값인 80 l /인·일을 적용
- 지원시설용지의 생활용수도 상기 기준상 관공서사무소기준(60~100 l /인·일) 중 중간값인 80 l /인·일을 적용
- 침투부하율은 「예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2015)」에서 제시한 1.36 적용

〈 생활용수량 산정 〉

유치업종	인구	급수원단위 (l /인·일)	침투부하율	일최대급수량 (㎥/일)
합 계	837			91
C10 식 료 품	169	80.0	1.36	18
C11 음 료	92	80.0	1.36	10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490	80.0	1.36	53
C25 금속 가공제품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C28 전기장비제품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지원시설용지	86	80.0	1.36	10

라) 배수지계획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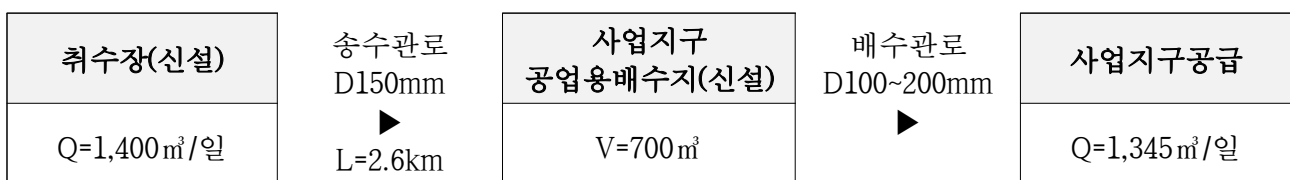
- 사업부지내 원활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를 신설

〈 배수지계획 〉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용 량 (㎥)	비 고
기 정	배 수 지 (공업용수)	사업대상지 내부	V=700	

마)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 공업용수 공급은 내성천변 취수장(Q=1,400㎥/일) 신설 및 사업지구내 공업용 배수지(V=700㎥) 신설을 계획하여 공급



4) 오·폐수계획 (변경)

가) 공장폐수량 산정 (변경없음)

- 공장폐수는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환경부)」의 업종별 발생폐수량을 최근 3개년도의 평균값으로 하여 폐수화율 원단위를 적용

< 공업폐수량 산정 >

구 분	일최대급수량 (㎥/일)	폐수화율 (%)	계획폐수량 (㎥/일)	지하수량 (㎥/일)	일최대폐수량 (㎥/일)
계	1,345		596	30	626
식료품제조업 (C10)	381	72.88	278	14	292
음료제조업 (C11)	703	29.28	206	10	21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C22) 금속가공제품 (C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C27) 전기장비 (C28) 기타기계 및 장비 (C29)	261	43.04	112	6	118

- 주) 1.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건교부 2006. 12)
2. 예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3. 지하수량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5%적용(환경부 2021. 6)

나) 생활오수량 산정 (변경없음)

- 예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효수율 및 오수전환율 적용

< 생활오수량 산정 >

유치업종	인구	일최대 급수량 (㎥/일)	유효 수율 (%)	오수 화율 (%)	일최대 오수량 (㎥/일)	지하 수량 (㎥/일)	계획 일최대 오수량 (㎥/일)
합 계	837	91			73	4	77
C10 식료품	169	18	90	90	14	1	15
C11 음료	92	10	90	90	8	0.5	8.5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C25 금속가공제품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C28 전기장비제품 C29 기타기계 및 장비	490	53	90	90	43	2	45
지원시설용지	86	10	90	90	8	0.5	8.5

다) 총 오·폐수량 산정 (변경없음)

- 오·폐수량은 공장폐수 626㎥/일, 생활오수 77㎥/일, 총 703㎥/일로 산정

라) 하수처리계획 (변경)

- 사업지구 내 발행하는 오·폐수는 지구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하여 방류
- 지구내 오수관로는 L=1,417m(D200, D300mm)로 계획

5) 통신공급계획 (변경없음)

- 통신수요량 약 568회선으로 추정
- 통신공급은 KT예천지사와 협의하여 공급할 계획임

< 통신수요량 >

구 분	계획면적(㎡)	연면적(㎡)	원단위	수요량(회선)	비고
합 계	126,238	189,357		568	
산업시설용지	122,572	183,858	0.3회선/100㎡	552	용적률 150%
지원시설용지	1,598	2,397	0.3회선/100㎡	7	
주차장	2,068	3,102	0.3회선/100㎡	9	

6) 자원순환 집행계획 (변경없음)

가) 폐기물발생량 추정 (변경없음)

- 단지내 폐기물은 크게 사업장폐기물(일반, 지정폐기물)과 종업원에 의한 생활 폐기물로 구분하여 발생량 산정

구 분	면적(㎡)	종사자수(인)	생활폐기물 발생량(ton/일)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ton/year)
산업시설용지	122,572	751	240.32	234.23
식료품	56,895	261	83.52	56.90
음료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65,677	490	156.8	177.33
금속 가공제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지원시설용지	1,598	86	12.04	-
합 계	124,170	837	252.4	234.23

자료 : 1. 제6차(2021~2022년)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22. 12, 환경부

2.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 연구, 2015,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없음)

-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은 각각 예천군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의해 소각 및 매립처리토록 함
- 사업지구에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소각대상인 가연성 폐기물과 매립대상인 불연성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이며,
- 사업대상지내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임

9. 에너지사용계획 (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1) 기본방향 (변경없음)

- 전력 원단위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2023.02.28)』 및 한국전력 공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출
- 기타시설은 건축 연면적당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산출

2) 최대전력부하 예측 (변경없음)

- 사업지구 최대전력부하는 8,369kW로 예측됨

가) 산업시설

- 산업시설의 최대전력부하는 8,196kW로 예측됨

유치업종	부지면적 (㎡)	전력원단위 (kWh/㎡.년)	전력 사용량 (MWh/년)	가동시간 (hr)	평균부하 (kW)	부하율 (%)	개별 최대부하 (kW)
식료품	33,715	466.0	15,711	6,964	2,256	60.2	3,748
음 료	23,180	466.0	10,802	6,964	1,551	60.2	2,576
고무, 금속 등	65,677	273.0	17,930	7,358	2,437	51.4	4,741
합 계	122,572	-	44,443	-	6,244	-	11,065
총최대부하(kW)	11,065kW ÷ 1.35(부동률) = 8,196kW						

나) 기타시설

- 기타시설의 최대전력부하는 173kW로 예측됨

구 분	규 모(㎡)		단위부하 (VA/㎡)	전력부하 (kVA)	수용률 (%)	수요부하 (kVA)
	기정	변경				
지원시설	2,397㎡	2,397㎡	140	336	50	168
폐수처리장	703톤/일	703톤/일	100VA/톤	70	70	49
도 로, 주차장	26,147㎡	26,635㎡	1.25	33	100	33
합 계	-	-	-	406	-	217
변압기용량	250kVA/1.3(부동률) = 192kVA					
최대부하(kW)	192kVA×0.9(역률) = 173kW					

주) 도로, 주차장은 부지면적임

3)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 사업지구 필요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나. 열(연료)공급계획 (변경없음)

1) 기본방향 (변경없음)

- 열 원단위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2023.02.28)』을 참고하여 산출
- 용지별 열사용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시설 및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산출함

2) 열수요예측 (변경없음)

가) 산업시설 열수요 예측

- 산업시설의 연간 열부하는 88,780Gcal/년, 최대열부하는 12.6Gcal/h로 예측됨

유치업종	부지면적 (㎡)	연료 원단위 (Gcal/㎡.년)		열 수 요 (Gcal/년)		
		직접열	간접열	직 접 열	간 접 열	계
식료품	33,715	0.165	1.011	5,563	34,086	39,649
음료	23,180	0.165	1.011	3,825	23,435	27,260
고무, 금속 등	65,677	0.186	0.147	12,216	9,655	21,871
합 계	122,572	-	-	21,604	67,176	88,780

유치업종	간접열수요 (Gcal/년)	가동률 (%)	가동시간 (hr)	평균부하 (Gcal/h)	부하율 (%)	개별최대 부하 (Gcal/h)
식료품	34,086	79.5	6,964	4.9	75.0	6.5
음료	23,435	79.5	6,964	3.4	75.0	4.5
고무, 금속 등	9,655	84.0	7,358	1.3	43.9	3.0
합 계	67,176	-	-	9.6	-	14.0
사업지구 총 최대부하	14.0Gcal/h × 0.9(동시부하율) = 12.6Gcal/h					

나) 기타시설 열수요 예측

- 기타시설의 난방(급탕)용 연간 열수요량은 176Gcal/년, 최대열부하는 0.1Gcal/hr로 예측됨

구 분	연간 열 수요량(Gcal/년)			최대열부하(Gcal/hr)		
	난 방	급 탕	계	난 방	급 탕	계
지원시설	143	33	176	0.1	0.0	0.1

다) 기타시설 취사용 연료 예측

- 기타시설의 취사용 연료사용량은 1천Nm³/년으로 예측됨

건 물 용 도	규 모 (㎡)	원단위 (Mcal/㎡·년)	가스수요량		
			Gcal/년	천Nm³/년	toe/년
지원시설	2,397	2.84	7	1	1

3) 연료 공급계획 (변경없음)

- 사업지구 필요 도시가스는 (주)대성청정에너지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구 분	직접열 연료수요량			간접열 연료수요량		
	열수요량 (Gcal/년)	연료수요량(LNG)		열수요량 (Gcal/년)	연료수요량(LNG)	
		천Nm³/년	toe/년		천Nm³/년	toe/년
식료품	5,563	541	557	34,086	3,313	3,409
음료	3,825	375	382	23,435	2,300	2,344
고무, 금속 등	12,216	1,199	1,222	9,655	947	965
지원시설	-	-	-	176	22	22
취사용	7	1	1	-	-	-
냉 방 용	21,611	2,116	2,162	67,352	6,582	6,740
합 계	43,222	4,232	4,324	134,704	13,164	13,480

4)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변경없음)

- 본 사업지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39호(2020.02.28.) 「제5차 집단 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공급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항 목	요 건	사 업 지 구	결 과
연료 사용량(간접열)	연간 5만toe이상	0.67 만toe/년	부적합
열 밀 도	60Gcal/k㎡·h 이상	70.3 Gcal/k㎡·h	적 합
에너지생산비율	열생산 용량이 전력생산 용량을 초과할 것	해당 없음	-
발전시설용량	2만 kW 이상	해당 없음	-

주) 연료사용량 및 최대부하를 감안한 열밀도는 집단에너지시설로부터 열공급이 가능한 시설에 한하여 산정

10.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변경없음)

- 공공폐수처리시설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환경부, 2020.1」 상 지원기준에 따라 예천군은 우선지원농어촌에 해당되어 100% 지원 대상임

< 농공단지 지원비율(%) >

합 계	일반 농어촌		추가지원 농어촌		우선지원 농어촌
	국고	원인자 등	국고	원인자 등	국고
100	50	50	70	30	100

1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1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80,699	감) 427	180,272	100.0	
계획관리지역	180,699	감) 427	180,272	100.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예2	예천 제3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보문면 산월리 일원	180,699	감) 427	180,272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예2	예천 제3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및 구역 확장 - A=180,699㎡→180,272㎡(감 427㎡) ※ 면적 변경 : 감) 3,335㎡, 구역 확장 : 증) 2,908㎡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및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제2농공단지 제척지역 편입에 따라 농공단지 구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변경 및 구역 확장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 로(변경)

(가)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12	1,884	24,079	1	92	1,840	2	450	6,750	9	1,342	15,489
	변경	12	1,906	24,567	1	92	1,840	2	450	6,750	9	1,364	15,977
중로	기정	9	1,735	23,518	1	92	1,840	2	450	6,750	6	1,193	14,928
	변경	9	1,757	24,006	1	92	1,840	2	450	6,750	6	1,215	15,416
소로	기정	3	149	561	-	-	-	-	-	-	3	149	561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농1	20	집산도로	92	신월리	759-6	신월리	433-1	일반도로	-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기정	중로	2	농1	15	국지도로	277	신월리	433-1	신월리	565-3	일반도로	-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기정	중로	2	농2	15	국지도로	173	신월리	433	신월리	253-1	일반도로	-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기정	중로	3	농1	12	국지도로	222	신월리	산68임	신월리	433-1	일반도로	-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변경	중로	3	농1	12	국지도로	234	승본리	573	신월리	433-1	일반도로	-		노선 연장
기정	중로	3	농2	12	국지도로	127	신월리	253-1	신월리	252-3	일반도로	-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기정	중로	3	농3	12	국지도로	332	신월리	252-3	신월리	565-3	일반도로	-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기정	중로	3	농4	12	국지도로	224	신월리	562	신월리	산65	일반도로	-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변경	중로	3	농4	12	국지도로	234	승본리	570	신월리	산65	일반도로	-		노선 연장
기정	중로	3	농5	12	국지도로	183	신월리	산65	신월리	252-3	일반도로	-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기정	중로	3	농6	12	국지도로	105	신월리	580-4	신월리	260	일반도로	-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기정	소로	3	농1	4	국지도로	88	신월리	565-3	승본리 산146-1		일반도로	-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기정	소로	3	농2	4	국지도로	26	신월리	562	신월리	563-2	일반도로	-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기정	소로	3	농3	3	국지도로	35	신월리	253-1	신월리	705-3	일반도로	-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농1	중로3-농1	· 노선 연장 - B = 12m - L = 222m → 234m (증 12m)	· 예천 제2농공단지와의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선 연장
중로3-농4	중로3-농4	· 노선 연장 - B = 12m - L = 224m → 234m (증 10m)	· 예천 제2농공단지와의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선 연장

(2)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주차장	2개소	2,068	-	2,068		
기정	농-1	주차장	보문면 신월리 431번지 일원	1,045	-	1,045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기정	농-2	주차장	보문면 신월리 561번지 일원	1,023	-	1,023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나) 공간시설 (변경)

(1)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표 번	면시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녹 지		5개소	20,964	감) 915	20,049		
변경	농-1		녹지	완충녹지	보문면 신월리 551-5번지 일원	3,250	감) 517	2,733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면적 변경
변경	농-2		녹지	완충녹지	보문면 신월리 253-1번지 일원	10,373	감) 1,650	8,723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면적 변경
변경	농-3		녹지	완충녹지	보문면 승본리 산146-1번지 일원	4,420	감) 703	3,717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면적 변경
변경	농-4		녹지	완충녹지	보문면 신월리 565-6번지 일원	2,921	감) 465	2,456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면적 변경
신설	농-5		녹지	완충녹지	보문면 승본리 573번지 일원	-	증) 2,420	2,420		신설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농-1	녹 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A = 3,250㎡ → 2,733㎡ (감 517㎡)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변경
농-2	녹 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A = 10,373㎡ → 8,723㎡ (감 1,650㎡)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변경
농-3	녹 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A = 4,420㎡ → 3,717㎡ (감 703㎡)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변경
농-4	녹 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A = 2,921㎡ → 2,456㎡ (감 465㎡)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변경
농-5	녹 지	· 완충녹지 신설 - A = 2,420㎡	· 공해 등 예방을 위해 예천 제2농공단지 경계부 완충녹지 신설

(2)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농1	공원	소공원	보문면 신월리 431 일원	1,924	-	1,924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3) 공원조성계획 (변경없음)

(가) 총괄표

구 분		결정면적		비고
		면 적(㎡)	구성비(%)	
총 계		1,924	100.0	
세부 시설	소 계	143	7.4	
	도로 및 광장	95	4.9	
	휴양시설	48	2.5	
녹지 및 기타		1,781	92.6	

(나) 공원조성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 분	기호	세부시설명	결정면적		공작물 (개소)	비고
			면적(㎡)	비율(%)		
총 계			1,924	100.0	7	
시설소계			143	7.4	7	
도로 및 광장	소 계		95	4.9		
		도로	95	4.9		
휴양 시설	소 계		48	2.5	7	
	1	휴게쉼터	48	2.5	7	
		1-1	파고라		1	벤치일체형
		1-2	평의자		2	
		1-3	등의자		2	
		1-4	등의자		2	
녹지 및 기타	소 계		1,781	92.6		
	녹 지		1,781	92.6		

(다) 도로 결정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63.3	94.8	-	-	
1	기정	소로	3	농4	1.5	16.7	25.0	주차장	소로3-농5
2	기정		3	농5	1.5	46.6	69.8	공원 서측 경계	주차장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농-1	수도공급 설비	보문면 승본리 산146-1번지 일원	487	-	487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라) 방재시설 (변경없음)

(1)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농-1	유수지	저류 시설	보문면 신월리 504-1번지 일원	3,874	-	3,874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마)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농-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보문면 신월리 504번지 일원	3,133	-	3,133	예천군 고시 제2024-126호 (24.10.17.)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A1	1,598	A1-1	보문면 신월리 260	779	지원시설용지
		A1-2	보문면 신월리 431	819	지원시설용지
B1	9,091	B1-1	보문면 신월리 503-1	4,246	산업시설용지
		B1-2	보문면 신월리 502	4,845	산업시설용지
B2	24,624	B2-1	보문면 신월리 561	4,066	산업시설용지
		B2-2	보문면 신월리 567	4,386	산업시설용지
		B2-3	보문면 신월리 산69	4,040	산업시설용지
		B2-4	보문면 신월리 산68	3,706	산업시설용지
		B2-5	보문면 신월리 산68	4,386	산업시설용지
		B2-6	보문면 신월리 산68	4,040	산업시설용지
B3	14,636	B3-1	보문면 신월리 565-2	5,102	산업시설용지
		B3-2	보문면 신월리 564	4,896	산업시설용지
		B3-3	보문면 신월리 566	4,638	산업시설용지
B4	4,423	B4-1	보문면 신월리 433	4,423	산업시설용지
B5	18,757	B5-1	보문면 신월리 산66	3,192	산업시설용지
		B5-2	보문면 신월리 759-4	3,248	산업시설용지
		B5-3	보문면 신월리 253-1	5,056	산업시설용지
		B5-4	보문면 신월리 258-1	4,069	산업시설용지
		B5-5	보문면 신월리 569	3,192	산업시설용지
B6	23,012	B6-1	보문면 신월리 산72-1	3,780	산업시설용지
		B6-2	보문면 신월리 597-2	3,836	산업시설용지
		B6-3	보문면 승본리 367	3,890	산업시설용지
		B6-4	보문면 신월리 산64-2	3,890	산업시설용지
		B6-5	보문면 신월리 597-1	3,836	산업시설용지
		B6-6	보문면 신월리 산65	3,780	산업시설용지
B7	28,029	B7-1	보문면 승본리 366-2	3,991	산업시설용지
		B7-2	보문면 승본리 366-2	3,991	산업시설용지
		B7-3	보문면 승본리 365-1	7,054	산업시설용지
		B7-4	보문면 신월리 산63	5,463	산업시설용지
		B7-5	보문면 신월리 산63	3,953	산업시설용지
		B7-6	보문면 신월리 251-3	3,577	산업시설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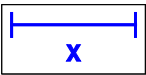
※ 상기 면적(획지)은 도로에 의해 구획된 가구면적 범위에서 유치업종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대지 분할가능선으로 구획된 면적으로서, 향후 산업시설용지 분양시 입주업체의 분양요구에 따라 공급면적을 대지분할 가능성과 무관하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공급할 수 있음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B1-1~2, B2-1~6, B3-1~3, B4-1, B5-1~5, B6-1~6, B7-1~6	-	용 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부대시설 포함)	산업시설 용 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제3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농공 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공장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		
A1-1~2	-	용 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지원시설 용 지
			권장용도	· 생산활동지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 4층 이하		

4)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차량출입불허구간

구 분	적 용 기 준
차량출입 불허구간 	· 대상지내 주요 가각부 부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계획 ※ 건축물에 대한 결정도 참조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예천군 지역경제과(☎054-650-62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조서
가. 수용·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40,378.0	191,385.7	180,699.0	180,272.0						
1	보문면 신월리	225	225-4	답	1,556.0	1,155.0	1,161.0	1,155.0	예천군					지적분할
2	보문면 신월리	225-1	225-5	답	1,491.0	1,190.0	1,181.0	1,190.0	예천군					지적분할
3	보문면 신월리	251	251-2	답	1,167.0	955.0	956.0	955.0	예천군					지적분할
4	보문면 신월리	251-1	251-3	답	622.0	508.0	506.0	508.0	예천군					지적분할
5	보문면 신월리	252	252-2	답	2,322.0	1,909.0	1,903.0	1,909.0	예천군					지적분할
6	보문면 신월리	252-1	252-3	답	3,101.0	2,647.0	2,650.0	2,647.0	예천군					지적분할
7	보문면 신월리	253	253-2	답	2,771.0	2,736.0	2,727.0	2,736.0	예천군					지적분할
8	보문면 신월리	253-1	253-1	답	2,578.0	2,578.0	2,578.0	2,578.0	예천군					
9	보문면 신월리	258	258	답	2,781.0	2,781.0	2,781.0	2,781.0	예천군					
10	보문면 신월리	258-1	258-1	답	3,062.0	3,062.0	3,062.0	3,062.0	예천군					
11	보문면 신월리	259	259	답	1,019.0	1,019.0	1,019.0	1,019.0	예천군					
12	보문면 신월리	259-1	259-1	답	1,164.0	1,164.0	1,164.0	1,164.0	예천군					
13	보문면 신월리	260	260	답	879.0	879.0	879.0	879.0	예천군					
14	보문면 신월리	431	431	답	3,713.0	3,713.0	3,713.0	3,713.0	예천군					
15	보문면 신월리	432	432	답	1,634.0	1,634.0	1,634.0	1,634.0	예천군					
16	보문면 신월리	432-1	432-1	답	1,125.0	1,125.0	1,125.0	1,125.0	예천군					
17	보문면 신월리	433	433	답	2,260.0	2,260.0	2,260.0	2,260.0	예천군					
18	보문면 신월리	433-1	433-1	답	2,324.0	2,324.0	2,324.0	2,324.0	예천군					
19	보문면 신월리	461	461	답	2,533.0	2,533.0	2,533.0	2,533.0	예천군					
20	보문면 신월리	502	502	답	945.0	945.0	945.0	945.0	예천군					
21	보문면 신월리	502-1	502-1	답	1,839.0	1,839.0	1,839.0	1,839.0	예천군					
22	보문면 신월리	503	503	답	2,520.0	2,520.0	2,520.0	2,520.0	예천군					
23	보문면 신월리	503-1	503-1	답	2,202.0	2,202.0	2,202.0	2,202.0	예천군					
24	보문면 신월리	504	504	답	2,983.0	2,983.0	2,983.0	2,983.0	예천군					
25	보문면 신월리	504-1	504-1	전	2,157.0	2,157.0	2,157.0	2,157.0	예천군					
26	보문면 신월리	515-5	515-8	도로	174.0	105.0	105.0	105.0	예천군					지적분할, 미등기
27	보문면 신월리	550-2	550-9	도로	1,134.0	117.0	117.0	117.0	김**정	홍천군 홍천면 회망리 **				지적분할
28	보문면 신월리	551-4	551-5	도로	380.0	210.0	297.0	210.0	예천군					지적분할
29	보문면 신월리	561	561	전	2,491.0	2,491.0	2,491.0	2,491.0	예천군					
30	보문면 신월리	561-1	561-1	전	37.0	37.0	37.0	37.0	예천군					
31	보문면 신월리	562	562	답	1,257.0	1,257.0	1,257.0	1,257.0	예천군					
32	보문면 신월리	563-3	563-4	전	165.0	26.0	26.0	26.0	예천군					지적분할
33	보문면 신월리	564	564	답	3,630.0	3,630.0	3,630.0	3,630.0	예천군					
34	보문면 신월리	565-1	565-6	전	1,022.0	872.0	868.0	872.0	예천군					지적분할
35	보문면 신월리	565-2	565-2	전	1,420.0	1,420.0	1,420.0	1,420.0	예천군					
36	보문면 신월리	565-3	565-3	전	1,572.0	1,572.0	1,572.0	1,572.0	예천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7	보문면 신월리	566	566	전	1,382.0	1,382.0	1,382.0	1,382.0	예천군					
38	보문면 신월리	567	567	전	873.0	873.0	873.0	873.0	예천군					
39	보문면 신월리	568	568	전	886.0	886.0	886.0	886.0	예천군					
40	보문면 신월리	569	569	전	2,408.0	2,408.0	2,408.0	2,408.0	예천군					
41	보문면 신월리	577-2	577-4	도로	26.0	5.0	5.0	5.0	안*호	예천군 예천읍 노상동 1**				지적분할
42	보문면 신월리	578-2	578-7	도로	99.0	8.0	7.0	8.0	김*정	예천군 예천읍 동본동 5**				지적분할
43	보문면 신월리	579-2	579-7	도로	116.0	8.0	8.0	8.0	이**룡	예천군 보문면 미호동 **				지적분할
44	보문면 신월리	580-2	580-6	도로	397.0	55.0	57.0	55.0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45	보문면 신월리	580-4	580-4	도로	566.0	409.0	432.0	409.0	예천군					지적분할
46	보문면 신월리	581-2	581-6	도로	400.0	145.0	144.0	145.0	경상북도					지적분할
47	보문면 신월리	596	596	전	2,645.0	2,645.0	2,645.0	2,645.0	예천군					
48	보문면 신월리	597-1	597-1	전	3,527.0	3,527.0	3,527.0	3,527.0	예천군					
49	보문면 신월리	597-2	597-2	전	2,774.0	2,774.0	2,774.0	2,774.0	예천군					
50	보문면 신월리	598	598	전	2,744.0	2,744.0	2,744.0	2,744.0	예천군					
51	보문면 신월리	599	599	전	469.0	469.0	469.0	469.0	예천군					
52	보문면 신월리	607	607	전	1,233.0	1,233.0	1,233.0	1,233.0	예천군					
53	보문면 신월리	609	609-2	전	2,374.0	20.0	21.0	20.0	예천군					지적분할
54	보문면 신월리	705	705-3	도로	7,773.0	2,874.0	4,218.0	2,874.0	농림축산 식품부					지적분할
55	보문면 신월리	705-2	705-2	도로	320.0	280.0	320.0	280.0	농림축산 식품부					지적분할
56	보문면 신월리		705-4	도로		40.0		40.0	농림축산 식품부					지적분할
57	보문면 신월리	759-4	759-4	구계	869.0	159.0	869.0	159.0	농림축산 식품부					지적분할
58	보문면 신월리		759-20	구계		237.0		237.0	농림축산 식품부					지적분할
59	보문면 신월리		759-21	구계		30.0		30.0	농림축산 식품부					지적분할
60	보문면 신월리		759-22	구계		443.0		443.0	농림축산 식품부					지적분할
61	보문면 신월리	759-6	759-18	구계	2,640.0	6.0	6.0	6.0	농림축산 식품부					지적분할
62	보문면 신월리	759-7	759-19	구계	1,270.0	5.0	10.0	5.0	농림축산 식품부					지적분할
63	보문면 신월리	772-1	772-5	구계	12,257.0	3,694.0	4,708.0	3,694.0	농림축산 식품부					지적분할
64	보문면 신월리		772-8	구계		44.0		44.0	농림축산 식품부					지적분할
65	보문면 신월리	772-4	772-7	구계	7,712.0	4,835.0	4,897.0	4,835.0	농림축산 식품부					지적분할
66	보문면 신월리	774	774-2	도로	1,562.0	5.0	6.0	5.0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67	보문면 신월리	775	775-1	구계	1,165.0	349.0	1,046.0	349.0	농림축산 식품부					지적분할
68	보문면 신월리		775-2	구계		41.0		41.0	농림축산 식품부					지적분할
69	보문면 신월리		775-3	구계		58.0		58.0	농림축산 식품부					지적분할
70	보문면 신월리		775-4	구계		547.0		547.0	농림축산 식품부					지적분할
71	보문면 신월리		775-5	구계		51.0		51.0	농림축산 식품부					지적분할
72	보문면 신월리	산61	산61-2	임야	3,226.0	533.0	562.0	533.0	이*훈	영주군 영주읍 가흥동 5**				지적분할
									김*배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웃노트기길 *				지적분할
73	보문면 신월리	산62	산62	임야	3,967.0	3,967.0	3,967.0	3,967.0	예천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74	보문면 신월리	산63	산63	임야	3,174.0	3,174.0	3,174.0	3,174.0	예천군					
75	보문면 신월리	산64-1	산64-1	임야	5,157.0	5,157.0	5,157.0	5,157.0	예천군					
76	보문면 신월리	산64-2	산64-2	임야	298.0	298.0	298.0	298.0	예천군					
77	보문면 신월리	산65	산65	임야	4,760.0	4,760.0	4,760.0	4,760.0	예천군					
78	보문면 신월리	산66	산66	임야	5,950.0	5,950.0	5,950.0	5,950.0	예천군					
79	보문면 신월리	산67	산67	임야	298.0	298.0	298.0	298.0	예천군					
80	보문면 신월리	산68	산68	임야	19,000.0	19,000.0	19,000.0	19,000.0	예천군					
81	보문면 신월리	산69	산69	임야	2,380.0	2,380.0	2,380.0	2,380.0	예천군					
82	보문면 신월리	산70	산70	임야	1,984.0	1,984.0	1,984.0	1,984.0	예천군					
83	보문면 신월리	산71	산71	임야	1,587.0	1,587.0	1,587.0	1,587.0	예천군					
84	보문면 신월리	산72	산72-3	임야	2,989.0	1,674.0	1,845.0	1,674.0	예천군				지적분할	
85	보문면 신월리	산72-1	산72-1	임야	10,905.0	10,905.0	10,905.0	10,905.0	예천군					
-	보문면 신월리	산73-3	-	임야	154.0	-	2.0	-					제척	
86	보문면 신월리	산75-2	산75-4	임야	26.0	34.0	13.0	34.0	황*혁	서울 성동구 응봉동 100 대림아파트 8-**4				지적분할
									김*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583 백현마을휴먼시아 2805-***6				지적분할
									황*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37, 3동 **2호 (부평동, 동아아파트)				지적분할
									예천군					지적분할
87	보문면 신월리	산134	산134	구계	9.0	9.0	9.0	9.0	농림축산식품부					
88	보문면 신월리	산135	산135	구계	60.0	60.0	60.0	60.0	농림축산식품부					
89	보문면 승본리	365	365-1	전	3,851.0	3,168.0	3,208.0	3,168.0	예천군				지적분할	
90	보문면 승본리	366	366-2	전	5,716.0	5,447.0	5,468.0	5,447.0	예천군				지적분할	
91	보문면 승본리	367	367	전	1,907.0	1,907.0	1,907.0	1,907.0	예천군					
92	보문면 승본리	-	570	공원	-	5,490.0	-	300.0	예천군				편입(제2농공단지 → 제3농공단지)	
93	보문면 승본리	-	571	도로	-	5,983.1	-	60.0	예천군				편입(제2농공단지 → 제3농공단지)	
94	보문면 승본리	-	573	공원	-	2,548.6	-	2,548.0	예천군				편입(제2농공단지 → 제3농공단지)	
95	보문면 승본리	산142	산142-1	임야	11,504.0	151.0	1,486.0	151.0	예천군				지적분할	
96	보문면 승본리		산142-2	임야		1,262.0		1,262.0	예천군			지적분할		
97	보문면 승본리	산143	산143	임야	1,984.0	1,984.0	1,984.0	1,984.0	예천군					
98	보문면 승본리	산144	산144	임야	3,570.0	3,570.0	3,570.0	3,570.0	예천군					
99	보문면 승본리	산146	산146-1	임야	23,405.0	4,261.0	4,808.0	4,261.0	예천군				지적분할	

나. 수용·사용할 지장물조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면적 및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	보문면 신월리	431	답	1-농사용전기	1	1	식	정*자	대구광역시 북구 대동로 9길 6-* (산격동)	
2				2-급수시설	1	1	식			
3	보문면 신월리	504-1	전	2-인삼보호사	2,157	2,157	m ²	이*찬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99번길 **	
4				3-울타리	1	1	식			
5				1-인삼	2,157	2,157	m ²			
6	보문면 신월리	561	전	1-아로니아	37	37	주	김*임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215 2동 **8호 (영주동, 현대강변타운)	
7				2-호두나무	1	1	주			
8				3-대추나무	1	1	주			
9				5-양뿔나무	1	1	주			
10				7-보리수나무	1	1	주			
11				8-1대추나무	2	2	주			
12				8-2대추나무	2	2	주			
13				8-3대추나무	5	5	주			
14				9-두릅나무	45	45	m ²			
15				10-오갈피나무	5	5	주			
16				11-호두나무	11	11	주			
17	보문면 신월리	562	답	1-사과나무	1	1	주	김*임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215 2동 **8호 (영주동, 현대강변타운)	
18				2-아로니아	24	24	주			
19	보문면 신월리	565-3	전	1-뽕나무	103	103	주	이*희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땅골못길 55-**	
20	보문면 신월리	566	전	1-이팝나무	193	193	주	김*한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노트기길 **	
21				2-자귀나무	1	1	주			
22				3-소나무	30	30	주			
23	보문면 신월리	568	전	1-대추나무	5	5	주	미상(신월리 568)		
24				2-벚나무1	2	2	주			
25				3-벚나무2	2	2	주			
26				1-복숭아나무	7	7	주			
27				2-뽕나무	1	1	주			
28				3-대추나무2	1	1	주			
29				4-산수유나무1	1	1	주			
30				5-산수유나무2	1	1	주			
31				6-벚나무	1	1	주			
32				7-복숭아나무	7	7	주			
33				7-매실나무	4	4	주			
34				8-감나무	1	1	주			
35				9-박태기나무	5	5	주			
36				10-단풍나무	1	1	주			
37	보문면 신월리	596	전	1-울타리	1	1	식	김*칠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보문로 324-**	
38	보문면 신월리	598	전	1-동산이전비	1	1	식	전*남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2	
39				2-그물망울타리	1	1	식			
40				3-그물망울타리	1	1	식			
41	보문면 신월리	산68	임야	15-산딸나무	171	171	주	김*진	예천군 보문면 보문로 324-**	
42				24-아로니아	17	17	m ²			
43				1-전나무	1	1	주			
44				2-옻나무	7	7	주			
45				3-꽃사과나무	1	1	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면적 및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46				4-호두나무	11	11	주			
47				5-참나무	30	30	주			
48				6-꿀담초	1	1	주			
49				7-영산홍	1	1	주			
50				8-모과나무	40	40	주			
51				9-배나무	2	2	주			
52				10-칠엽수	44	44	주			
53				11-라일락	2	2	주			
54				12-보리수나무	2	2	주			
55				13-잣나무	44	44	주			
56				14-팜나무	1	1	주			
57				16-노간주나무(두송나무)	1	1	주			
58				17-자두나무	6	6	주			
59				18-매실나무	5	5	주			
60				19-단풍나무	7	7	주			
61				20-조팝나무	10	10	주			
62				21-무궁화	3	3	주			
63				22-앵두나무	1	1	주			
64				23-바이텍스	20	20	주			
65				25-편참나무(핀오크)	3	3	주			
66				26-산벚나무	1	1	주			
67	보문면 승본리	367	전	1-그물망울타리	1	1	식	김*동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웃노트기길 **	
68				2-조류퇴치기	1	1	식			
69				3-고추지지대	1	1	식			
70	보문면 승본리	산143	임야	1-그물망울타리	1	1	식	김*동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웃노트기길 **	
71	보문면 신월리	산66	임야	비석-049	1	1	식	윤*식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길 25 101동 **8호 (개봉동 청실아파트)	
72	보문면 신월리	598	전	감나무	6	6	주	전*남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2	
73				매실나무	4	4	주			
74	보문면 신월리	609-2	전	대추나무	1	1	주	배*숙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웃노트기길 **	
75				매실나무	2	2	주			
76				자두나무	3	3	주			
77	보문면 신월리	705-3	도로	농사용전기(신월리 225-1번지 인근)	1	1	식	김*애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보문로 308-**	
78				관정(신월리 502-1번지 인근)	1	1	식	반*식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독정길 72-*	
79				농사용전기 (신월리 502-1번지 인근)	1	1	식			
80	보문면 신월리	772-5	구거	급수시설(신월리 503번지 인근)	1	1	식	미상(신월리 772-1)	-	
81	보문면 승본리	365-1	전	배수시설	1	1	식	김*일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천1길 *	
82				인삼1	644	644	m ²			
83				인삼보호사1	644	644	m ²			
84				인삼2	596	596	m ²			
85				인삼보호사2	596	596	m ²			
86				인삼3	330	330	m ²			
87				인삼보호사3	330	330	m ²			
88				인삼4	165	165	m ²			
89				인삼보호사4	165	165	m ²			
90	보문면 승본리	366-2	전	인삼	3,585	3,585	m ²	김*일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천1길 *	

다. 수용·사용할 분묘조서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면적 및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	보문면 승본리	산144	임야	1-그물망울타리	1	1	식	김*동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옷노트기길 **	
2	보문면 신월리	565-3	전	황금측백-002	5	5	주	이*희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땅골못길 55-**	
3				황금측백-003	4	4	주			
4	보문면 신월리	568	전	돌레석-004	1	1	식	안*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일로 50,407동 1**4호 (여수동, 연꽃마을)	
5				상석세트-005	1	1	식			
6				돌레석-005	1	1	식			
7				비석세트-005	1	1	식			
8				망주석-005	1	1	식			
9				백일홍-005	1	1	주			
10				향나무1-005	20	20	주			
11				향나무2-005	5	5	주			
12				박태기나무-005	1	1	주			
13				사철나무-005	1	1	주			
14				두릅나무-006	53	53	주	안*기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0-** 2층	
15				산수유-006	2	2	주			
16				자귀나무-006	1	1	주			
17				입비석-006	1	1	식			
18				개나리-006	11	11	m ²			
19	보문면 신월리	597-1	전	상석세트-007	1	1	식	박*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솔골길 2-**	
20				향나무1-008	1	1	주			
21				영산홍-008	3	3	주			
22				상석세트-008	1	1	식			
23				향나무2-008	1	1	주			
24	보문면 신월리	597-2	전	주목1-010	1	1	주	분묘미상 (신월리 597-2)	-	
25				주목2-010	1	1	주			
26				향나무011	1	1	주			
27				주목-011	1	1	주			
28				향나무-012	1	1	주			
29				주목나무-013	1	1	주			
30	보문면 신월리	산62	임야	영산홍-021	1	1	주	김*중	울산시 중구 염포로 26, **9호(반구동 유로캐슬아파트)	
31				향나무-021	3	3	주			
32				주목나무-021	1	1	주			
33				주목나무-023	3	3	주			
34	보문면 신월리	산64-1	임야	상석세트-032	1	1	식	분묘미상 (신월리 산64-1)	-	
35				측백나무1-032	2	2	주			
36				망주석-032	1	1	식			
37				측백나무2-032	1	1	주			
38	보문면 신월리	산66	임야	상석세트-050	1	1	식	윤*익	충남 부여군 양화면 양화북로 8-**	
39				향나무-052	2	2	주	김*수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84,2-**6호 (동서울한양아파트)	
40				주목나무-052	1	1	주			
41	보문면 신월리	산68	임야	와비-069	1	1	식	김*수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남악2길 10-*	
42				와비-070	1	1	식			
43				와비-071	1	1	식			
44				석축-107	1	1	식	김*김씨** 공파중증	예천군 보문면 보문로 324-**	
45	보문면 신월리	산70	임야	상석세트-119	1	1	식	여*현	경기도 평택시 지산2로 27,1동 **2호 (지산동한양정솔아파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면적 및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46				망주석-120	1	1	식			
47				상석세트-120	1	1	식			
48				상석세트-121	1	1	식			
49				망주석-121	1	1	식			
50	보문면 신월리	산72-1	임야	측백나무-150	2	2	주	이*희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땅골못길 55-**	
51				상석세트-151	1	1	식	윤*익	충남 부여군 양화면 양화북로 8-**	
52				황금측백-152	6	6	주	이*희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땅골못길 55-**	
53	보문면 승본리	산144	임야	상석세트-165	1	1	식	분묘미상 (승본리 산144)	-	
54	보문면 승본리	366-2	전	인삼보호사	3,585	3,585	m ²	김*일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천 1길 *	
55	보문면 신월리	산72-3	임야	상석세트-140(미분할)	1	1	식	황*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4-**1호 (봉래동1가,영광골든타워)	
56				석축-140(미분할)	1	1	식			
57				망주석140(미분할)	1	1	식			

교량 통행제한 공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된 교량(한천교)에 대하여 공중의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행제한을 실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 10. 1.

예 천 군 수

1. 통행제한 교량 현황

연번	시설명칭		시군구	읍면동	리	지 번	사 업 량(m)		정비 계획	비고
	구 분	명 칭					연 장	폭		
1	교량	한천교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585-6	123	10	2027년 이후 교량개체	

2. 통행제한 사유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교량의 안전성 확보 및 통행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3. 통행제한 기간 : 2026. 10. 1. ~ 교량 개체시까지

4. 통행제한 차량 : 모든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전면 금지

5. 문의처 : 도시과 도시개발팀 (☎054-650-6949)

6. 우회도로(우회교량(동본교, 용우교) : 붙임 참조

통행제한 노선 및 우회도로 노선



통행제한 노선 및 우회도로 노선

